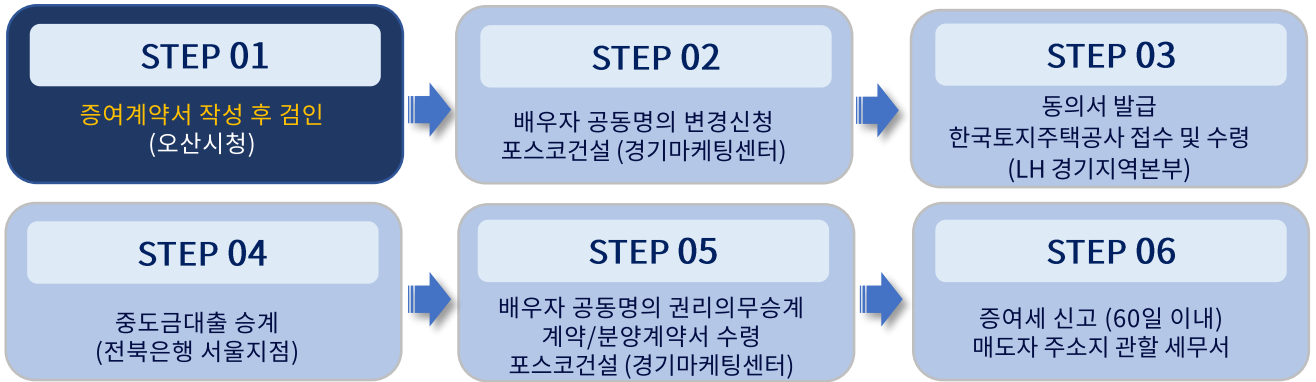


더샵 오산엘리포레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신청 안내문

- ※ 더샵 오산엘리포레 계약자는 전매제한 기간으로 공동명의가 불가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승인을 받으면 배우자간의 공동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.
- ※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신청서 ①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(오산시청) 절차가 완료 되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※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①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(오산시청) 절차를 완료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공동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세대가 아니시면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승인없이 공동명의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- ※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계약을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분양권 전매(배우자 공동명의 변경) 절차



■ 절차 및 구비서류 (※ 모든 서류는 본인 발급분이어야 합니다)

구분 (절차)	접수처	구비서류
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오산시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(031-8036-7333) ※ 증여자(원계약자) / 수증자(배우자) 중 1인 방문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여자, 수증자 공통 ① 증여계약서(오산시청에 양식 비치) ② 공급계약서
배우자 공동명의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스코건설 경기마케팅센터 (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89 동탄역 우성타워 8층) • 매월 첫째, 셋째주 화요일 사전전화 예약 후 방문가능 ※ 증여자(원계약자) / 수증자(배우자) 중 1인 방문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여자, 수증자 공통 ①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② 공급계약서(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) • 증여자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(수증자 인적사항 기재)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신분증 ⑤ 인감도장
전매 동의서 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토지주택공사 (LH 경기지역본부) 방문 접수 및 수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증자 ① 인감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③ 신분증 ④ 인감도장 • 분양권 전매동의서 및 분양권 전매동의신청서(경기센터에 양식 비치)
중도금대출 승계 및 상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도금대출 승계동의서 또는 상환확인서 발급(중도금 대출은행 방문) • 전북은행 서울지점 Tel : 02)3446-9951~3 ※ 중도금 대출 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중도금 대출은행에 문의 바랍니다. 	
권리의무승계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스코건설 경기마케팅센터 (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89 동탄역 우성타워 8층) • 매월 첫째, 셋째주 화요일 사전전화 예약 후 방문가능 ※ 증여자/수증자 본인 함께 방문 (증여자 본인 필수, 수증자 위임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여자 ① 전매동의서 ②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(수증자 인적사항 기재) ④ 일반 인감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⑥ 인감도장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보리세대일 경우) ⑧ 신분증 • 수증자 ① 인감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③ 신분증 ④ 인감도장 ※ 위임 시 (추가) ⑤ 인감증명서 ⑥ 위임장
분양계약서 수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권리의무승계 계약 후 바로 수령 가능 	

- ※ 전매제한 기간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만 변경(배우자 단독명의로의 변경은 제외)할 수 있으며, 배우자 외 다른 가족과의 공동명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(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에 의거)
- ※ 전매제한 기간에 공동명의 변경 후 단독명의로의 재 변경은 불가하니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고, 접수 후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.
- ※ 구비서류는 발급일 1개월 이내 원본만 가능하며,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.(대리인 발급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)
- ※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, 세금 관련,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, 당사과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
- ※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매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, 분양권 전매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